

신청·조회·발급

분류	대분류 전체	중분류 전체	소분류 전체
	기관분류 선택	제공기관 전체	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원서비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부서비스		장애인	<input type="checkbox"/> 검색 <input type="checkbox"/> 결과 내 재검색


신청순 | 정확도순 | 가나다순

장애인 증명서 발급

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는 기간동안 **장애인 증명서**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**장애인 증명서**가 필요한 경우에 **장애인 증명서**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신청

민원서비스 | 보건복지부 · 인증서 필요(본인)


문서확인번호: 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

장 애 인 증 명 서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		
영문명			
주소	주소		
	보호자 (필요시 기재)	보호자와의 관계 (필요시 기재)	
주장애 및 장애 정도	부장애 및 장애 정도		
등록번호	최초·재취득 등록일자		
종합 장애 정도			
제출처 및 용도			

위 사람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.



구 분	입 력 방 식
신청절차	1. 정부24(www.gov.kr) 2. 서비스 3. 신청 · 조회 · 발급 4.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5. 로그인 후 발급
비 고	하단에 정부24에서 발급받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, 상단에 문서확인 번호가 명시되어야 함

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정부24(www.gov.kr)의 민원발급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각 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해당인 바코드 또는 인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소스인용 문서확인프로그램)을 이용 가능합니다.